

# 2023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2023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대상기간 : 2021.1.1. ~ 2022.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붙임2]의 2023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의 경우 500점 만점이므로, 1000점 환산점수 적용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3.7.24. ~ 2023.10.31.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11월 중(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1월 중(예정)
  -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
  -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3]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3.12.~ 2024.1.
  - ※ 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여부 확정 예정

7. 기타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104/0109/3307)에게 문의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